

# 인도네시아의 산림 관련 법체계 및 조림사업 허가 절차

염인환<sup>1</sup> · 권형근<sup>1</sup> · 이준우<sup>2\*</sup> · 김세빈<sup>2</sup> · 박관수<sup>2</sup> · 한만성<sup>3</sup>

<sup>1</sup>충남대학교 대학원, <sup>2</sup>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sup>3</sup>PT. Hijau Artha Nusa

## The forestry-related legal system and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Indonesia

In-Hwan Yeom<sup>1</sup>, Hyeong-Keun Kweon<sup>1</sup>, Joon-woo Lee<sup>2\*</sup>, Se-bin Kim<sup>2</sup>, Gwan-soo Park<sup>2</sup>, Man-Seong Han<sup>3</sup>

<sup>1</sup>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sup>2</sup>Dept. of Environment and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sup>3</sup>Menara Jamsostek,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No.38, Jakarta 12710, Indonesia

Received on 9 August 2011, revised on 19 August 2011, accepted on 19 September 2011

**Abstract** : Of the countries where Korea has advanced for overseas afforestation investments, Indonesia might be the most important country. As the end of 2010, nine Korean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ing afforestation projects in Indonesia, covering a total area of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hectares roughly. Follow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fforestation investment covering five hundred thousand hectares (A/R CDM / industrial afforestation) signed between Korea and Indonesia, the two countries concluded in 2009 an additional MOU covering two hundred thousand hectares for biomass afforestation, thus securing a total afforestation area of seven hundred thousand hectares. Further it was guaranteed that afforestation license would have validity for maximum 95 year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long-term stable investments for afforestation projects. Forest law of Indonesia consists of Presidential decree and Governmental decree as superior regulations and Minister's decree as subordinate regulations, being made up of total 17 chapters. Forestry Minister's decree was amended at end of last year, as regards license for exploitation of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in afforestation area. In the past, such license to develop and use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had been granted under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11 / Menhut-II / 2008. After the amendment in 2010, however, the ground was shifted to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50 / Menhut-II / 2010, trimming the procedure to obtain afforestation license into a little simplified one.

**Key words** : Indonesia, MOU, Permission procedure, Overseas afforestation investments

### I. 서론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63%(KFS, 2010)를 차지하는 산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주요 목재 수입국가이다. 이는 일제의 산림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고갈되었고, 그로 인한 산림의 복구가 수십 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림목의 영급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인

해 목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목재의 초과 수요가 발생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목재의 초과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KFS, 2011).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자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외조림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지의 투자환경 및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외조림진출국으로 2010년 말 현재 9개 기업이 진출하여 약 15만ha 면적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6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간에 체결한 50만ha(A/R CDM / 산업조림) 조림투자 양해각서 체결하였고, 작년 말 조림지 내의 목재임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5749

E-mail address: jwlee@cnu.ac.kr

산물 이용사업 허가권에 관한 산림부장관령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림관련 법체계와 변경된 조림사업 허가절차를 제시하여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조림사업 진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현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산림관련 법체계를 살펴보고 개정된 조림사업의 허가 절차에 대해 파악하였다.

## III. 인도네시아의 산림법 체계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법상의 산림(Hutan)이란 ‘개체간 분리될 수 없는 자연환경 안에 수목이 우점하는, 또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 형태를 갖는 특정 생태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법은 1999년도에 법률 제41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FWI, 2011))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은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신의 축복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며 인간을 위해 다양한 공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최적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② 산림은 삶을 유지시키고 자원의 근본이 되는 체계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영속적인 기능을 보호하며 공정하며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

③ 국제적인 통찰력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참여, 관습과 문화 및 국가 규범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④ 1967년 No. 5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법은 더 이상 산림 감독 및 관리의 원칙, 현재의 발전 요구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될 필요가 있다.

⑤ 이에 위 4가지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산림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법 체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뉜다(Fig. 1). 상위법에는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산림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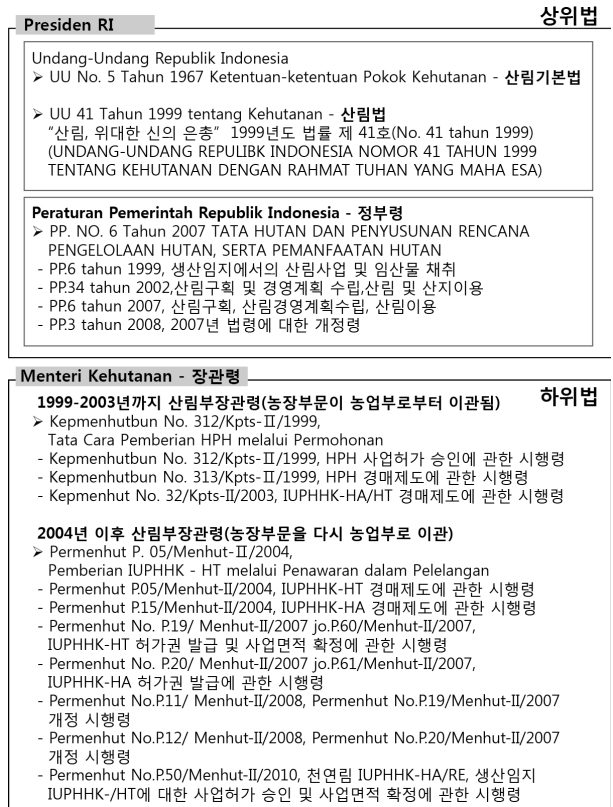


Fig. 1. The forestry legal system in Indonesia (TMFRI, 2011).

인 UU No. 5 Tahun 1967 Ketentuan-ketentuan Pokok Kehutanan과 산림법인 UU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정부령인(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Peraturan Pemerinta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산림법은 1999년도 법률 제41호(No. 41 tahun 1999)로 제정되어 있으며, 산림의 정의, 산림용어의 정의, 산림상태와 기능, 산림관리, 산림계획, 산림이용, R&D, 교육, 훈련 및 지도 등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산림부장관령으로 결정서, 시행령 등을 포함한다.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은 산림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생산임지에서의 산림사업 및 임산물 채취, 산림계획 및 경영계획 수립, 산림 및 산지이용, 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수립, 산림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법인 장관령(Menteri Kehutanan)에서는 Kepmenhutbun No. 312/kpts-II/1999, HPH 사업허가 승인에 관한 시행령, 경매제도에 관한 시행령, 허가권 발급 및 사업면적 확정에 관한 시행령, 생산임지 IUPHHK-HT에 대한 사업허가 승인 및 사업면적 확정에 관한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 생태와 기능에 따른 산림구분

산림은 국유림(Hutan Negara)과 사유림(Hutan Hak)으로 구분하며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의 관습법일 경우 관습림을 국유림에 포함시키며 관리권한은 정부에 반환한다. 주요기능(Fungsi Pokok)에 따라 보존임지(Hutan Konservasi), 보호임지(Hutan Lindung), 생산임지(Hutan Produksi)로 구분한다. 또한, 보존임지(Hutan Konservasi)는 자연보호산지(Kawasan Hutan Suaka Alam), 영구자연보호산지(Kawasan Hutan Pelestarian Alam), 야생동물 수렵장(Taman Buru)으로 구분한다.

### 2) 산림계획

산림계획(Perencanaan Kehutanan)은 산림조사(Inventarisasi Hutan), 산지면적확정(Pengukuhan Kawasan Hutan), 산지이용구분(Penatagunaan Kawasan Hutan), 산지경영지구의 구획(Pembentukan Wilayah Pengelolaan Hutan), 산림계획의 수립(Penyusunan Rencana Kehutanan)으로 나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산림조사

- 국가차원의 산림조사(Inventarisasi Hutan Tingkat Nasional)
- 지역차원의 산림조사(Inventarisasi Hutan Tingkat Wilayah)
- 하천유역차원의 산림조사(Inventarisasi Hutan Tingkat Daerah Alian Sungai)
- 경영단위차원의 산림조사(Inventarisasi Hutan Tingkat Unit Pengelolaan)
- 산림조사 결과는 산지면적확정(Pengukuhan Kawasan Hutan), 산림자원의 균형수립(Penyusunan Neraca Sumber Daya Hutan, 보고서의 일종), 산림계획과 산림정보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② 산지면적확정

산지면적확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한다.

- 산지지정(Penunjukan Kawasan Hutan),
- 산지경계확정(Penataan Batas Kawasan Hutan),
- 산지지도화(Pemetaan Kawasan Hutan)

- 산지확정(Penetapan kawasan hutan)

#### ③ 산지이용구분

산지면적확정에 근거하며, 정부는 산지이용구분을 실행한다. 또한, 산지이용구분은 산지이용 및 기능을 확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④ 산지경영지구의 구획

- 산지경영지구의 구획은 주(Propinsi), 시/군(Kota/Kabupaten), 관리사업소(Unit Pengelolaan)의 단계에 대하여 실행한다.
- 관리사업소(Unit Pengelolaan) 단계의 산림경영지구의 구획은 임지특성, 임상, 산림기능, 하천유역조건, 사회문화, 경제, 지역사회의 관습법을 포함한 그 지역사회의 대표기구 및 행정구역상 경계를 고려하여 실행한다.
- 산림조건 및 특성, 임상으로 인한 행정구역상 경계를 침범한 산림관리사업소(Unit Pengelolaan Hutan)의 구획은 특별히 장관이 확정한다.
- 정부는 환경, 사회,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의 적정성을 위해 각 하천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충분한 산지면적과 식생피복을 감안해서 확정한다.
- 하천유역 또는 도서지역의 산지면적 확정은 하천유역 또는 도서지역 면적의 최소 30%를 산림지역으로 확정한다.

#### ⑤ 산림계획의 수립

환경요소 및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가 산림계획을 수립하며, 산림계획은 계획 기간, 지리적 규모와 산지의 주요기능에 따라 작성한다.

### 3) 산림관리

산림관리는 다음 네 가지의 업무를 포함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구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은 블록의 생태계, 유형, 기능 및 산림이용계획을 통한 산지구분(Pembagian Kawasan Hutan)을 포함하며 블록은 임반(Petak-Petak)으로 구분한다.

② 산림 및 산지이용(Pemanfaatan Hutan dan Penggunaan Kawasan Hutan)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채취 금지 구역, 국립공원의 핵심지구(Zona Inti)와 원시림지구(Zona

Rimba)를 제외한 산지에서 가능하며, 사유림(Hutan Hak) 이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 소유자가 그 기능에 따라 이행한다. 또한, 보호 및 보존 기능이 있는 사유림 이용은 그 기능이 간섭받지 않는 기간 동안 이행한다. 관습림 이용은 관련 원주민(Masyarakat Hukum Adat)이 그 기능에 따라 이행하고, 보호 및 보존 기능이 있는 관습림 이용은 그 기능이 간섭받지 않는 기간 동안 이행한다.

③ 산림복구 및 재생(Rehabilitasi dan Reklamasi Hutan)은 조림, 녹화, 무육, 조림목 보육 또는 식생 및 구조물(Vegetatif dan Sipil)을 통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행하며, 야생동식물 수렵 및 채취 금지구역과 국립공원 핵심지구를 제외한 모든 산림 및 산지에서 실행한다.

④ 산림보호와 자연보존(Perlindungan Hutan dan Konservasi Alam)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금지하고 있다.

- 불법으로 산지를 경작(Mengerjakan)하여 사용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 산지 벌목(Merambah), 저수지(Waduk) 및 호수(danau)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늪지대(Daerah Rawa)의 좌우측 하안경계(Tepi Mata Air)로부터 200m 이내
- 하안 좌우측 경계로부터 100m이내
- 강 지류(Anak Sungai)경계로부터 50m 이내
- 산림방화
- 권한이나 허가권 없이 산림 내에서 벌목 또는 임산물의 수확 또는 채취
- 불법으로 수집 또는 채취된 출처가 명확한 또는 불분명한 (Patut diduga Berasal) 임산물의 수송, 매매, 거래, 위탁, 보관, 또는 소유하는 행위

#### IV. 산림이용 허가권의 종류

산림이용 허가 관련 법규(산림구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이용에 관한 2008년 정부 개정령 제3호(PT.UAF, 2011))에 따르면 산림이용 허가권은 Fig. 2와 같이 산지이용, 환경재화이용, 목재임산물이용, 비목재임산물이용, 목재임산물채취, 비목재임산물채취 등 6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주요 허가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IUPK(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산지이용사업허가 - 보호임지 또는 생산임지 이용을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 약용식물재배, 원예식물재배, 양봉,

목적에 따른 구분	허가권 종류
산지이용	IUPK(산지이용)
환경재화이용	IUPJL(환경재화이용)
목재임산물이용	IUPHHK - HA(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 IUPHHK - RE(천연림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 IUPHHK - HT(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IUPHHK - HTR IUPHHK - HTHR
비목재임산물이용	IUPHHBK - HA(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이용) IUPHHBK - HT(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이용)
목재임산물채취	IPHHK(천연림 목재임산물 채취)
비목재임산물채취	IPHHBK - HA(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채취) IPHHBK - HT(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채취)

Fig. 2. Permiss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orest utilization (FWI, 2011; TMFRI, 2011)

야생동물번식, 가축사료재배

- 허가기간 : 보호임지 10년, 생산임지 5년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 ② IUPJL(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환경재화이용사업허가 - 보호임지 또는 생산임지의 환경재화 이용을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및 허가 기간: 하천 재화 - 보호임지 10년, 생산임지 25년, 수자원 10년, 자연관광 35년, 생물다양성 보호 50년, 환경의 안전 및 보호는 투자소요에 따라서 다름, 탄소 흡수 및 저장 30년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인니 민간기업(BUMS Indonesia), 국영기업, 지방기업
- ③ IUPHHK-HA(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Hutan Alam)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 수확 또는 벌채, 무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천연림 목재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및 허가기간: 목재 임산물 이용(산림경영 활동 포함) 55년, 생태계 복원 임산물 이용(산림경영 활동 포함) 60년(1회 35년 연장 가능)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인니 민간기업, 국영기업, 지방기업
- ④ IUPHHK-HT(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Hutan Tanaman) :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 지존작업, 양묘, 식재, 무육, 수확 및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및 허가기간 : 산업조림지(HTI) 최대 60년(1회 35년 연장 가능), 주민조림지(HTR) 최대 60년(1회 35년 연장 가능), 복구조림지(HTHR) 최대 1년 및 연장가능

- 허가 대상자 : HTI(조합, 인니 민간기업, 국영기업, 지방기업), HTR(개인, 조합), HTHR(개인, 조합, 인니 민간기업, 국영기업, 지방기업)

⑤ IUPHHK-RE(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Restorasi Ekosistem) : 천연림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 생산임지의 천연림 내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기능과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산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허가

⑥ IUPHHBK-HA(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Hutan Alam) : 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 수확 또는 벌채, 무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상의 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이용을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및 허가기간 : 가, 나 - 25년
- 가. 식재, 수확, 보육, 무육, 안전, 생산물 판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등나무, 사구, 니빠, 대나무 이용
- 나. 식재, 무육, 수확, 안전 및 생산물 판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액, 수피, 잎사귀, 과일 또는 종자, 향나무 이용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인니 민간기업, 국영기업, 지방기업

⑦ IUPHHBK-HT(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Hutan Tanaman) :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 지존작업, 양묘, 식재, 무육, 수확 및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이용을 위한 사업허가

- 가능 사업활동 및 허가기간 : 가, 나, 다 - 25년
- 가. 식재, 수확, 보육, 무육, 안전, 생산물 판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등나무, 사구, 니빠, 대나무 이용
- 나. 식재, 무육, 수확, 안전 및 생산물 판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액, 수피, 잎사귀, 과일 또는 종자, 향나무 이용
- 다. 식재, 무육, 수확, 가공 및 생산물 판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장관에 의해 선정된 바이오연료, 식물연료 원자재의 상품개발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인니 민간기업, 국영기업, 지방기업

⑧ IPHHK-HA(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Hutan Alam) : 천연림 목재임산물 채취허가 - 작업 기간 및 수확량을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확, 운송, 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임지 상의 목재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

- 가능 채취활동 및 허가기간 : 최대 1년
- 가. 산촌 주변 지역주민단체의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재 조달, 최대 50 m<sup>3</sup> 이내, 판매불가
- 나.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세대주에게 최대 20 m<sup>3</sup> 이내, 판매불가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⑨ IPHHBK-HA(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Hutan Alam) : 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채취허가 - 생산임지 또는 보호임지 상의 천연림 비목재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

- 가능 채취활동 및 허가기간
- 가. 보호임지(최대 1년, 6개월마다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 등나무, 꿀, 수액, 과일, 버섯, 제비집
- 나. 생산임지(최대 1년, 연장가능) : 지역주민의 필요충족을 위한 허가 및 등나무, 꿀, 수액, 과일 또는 종자, 잎, 향나무, 수피, 약용식물, 구근식물 등의 채취, 각 세대주당 최대 20ton 제한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⑩ IPHHBK-HT(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Hutan Tanaman) : 조림지 비목재임산물채취허가 - 생산임지 또는 보호임지 상의 조림지 비목재임산물 채취를 위한 허가

- 가능 채취활동 및 허가기간 : 최대 2년(연장 가능)지역주민의 필요 충족을 위한 허가(판매 가능), 복구조림으로 조성된 조림지에 대해 시행 및 등나무, 꿀, 수액, 과일 또는 종자, 잎, 향나무, 수피, 약용식물, 구근식물 등의 채취, 각 세대주당 최대 20ton 제한
- 허가대상자 : 개인, 조합

## V. 변경된 조림지 획득 및 조림사업 허가 절차

그동안의 조림지 내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권(산업조림권)은 산림부장관령 No. P 11 / Menhut-II / 2008에 따른생산임지(Hutan Produksi) 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권 (IUPHHK-HT)의 허가절차 및 임지제공에 관한 산림부장관령에 근거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 산림부장관령 No. P 50 / Menhut-II / 2010(천연림 내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 및 생태계복원사업 허가,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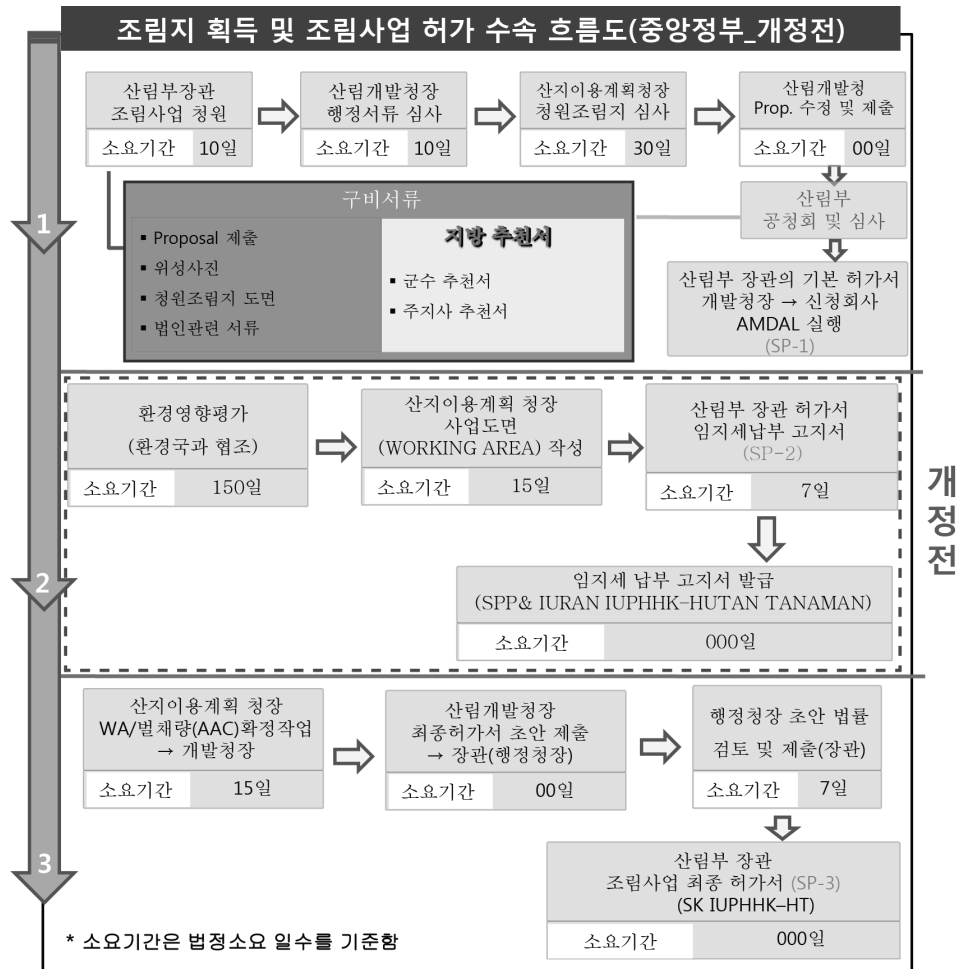


Fig. 3. Flow chart of forestation business procedure of permission(revision for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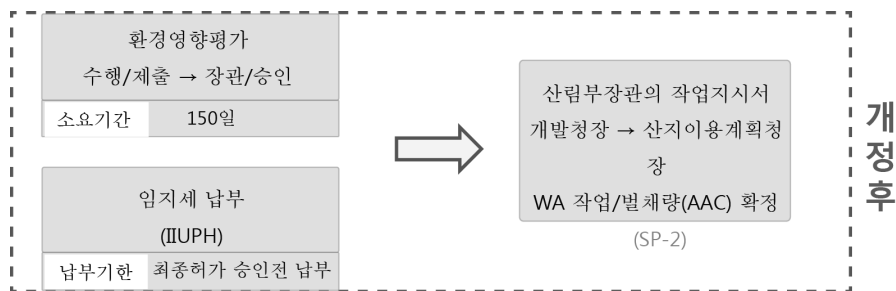


Fig. 4. Permiss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orest utilization(FWI, 2011; TMFRI, 2011)

임지 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권(IUPHHK-HT)의 허가절차 및 임지제공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조림사업에 대한 허가가 약간 간소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조림지 획득 및 조림사업 허가 수속과 비교하면 지방정부에서의 허가 절차는 변경된 것이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SP-3까지의 허가 절차 중에서 SP-2 단계에서의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어 산림부장관령을 개정하면서 얻고

자 했던 조림사업 투자절차의 확실성, 투자의 편이성, 투자 비용의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부장관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 허가 관련 구비서류나 행해야 할 일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ig. 3과 4에 변경된 조림지 획득 및 조림사업 허가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허가 관련하여 총 법정일수는 규정으

로 명시된 것만 최소한 2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최종허가취득까지는 통상 2~3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 VI. 결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외조림 진출국으로 2010년 말 현재 9개 기업이 진출하여 약 15만ha 면적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거 한국-인도네시아 양국간에 바이오매스 조림용으로 20만ha추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70만ha 조림지를 확보하였으며, 조림허가권을 최장 95년간(60+35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림투자의 기본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산림법 체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뉜다. 상위법은 산림기본법인 UU No. 5 Tahun 1967 Keten-tuan-ketentuan Pokok Kehutanan과 산림법인 UU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정부령인 Peraturan Pemerinta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법은(UU 41, 1999)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산림부장관령으로 결정서, 시행령 등을 포함한다.

2010년 말 조림지내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권에 관한 산림부장관령이 개정되었다. 그동안의 조림지 내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권(IUPHHK-HT)의 허가절차 및 임지제공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에 근거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 산림부장관령 No. P 50 / Menhut-II / 2010 (천연림내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 및 생태계복원사업 허가, 생산임지상의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 허가권 (IUPHHK-HT)의 허가절차 및 임지제공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조림사업에 대한 허가가 약간 간소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조림지 획득 및 조림사업 허가 수속과 비교하면 지방정부에서의 허가 절차는 변경된 것이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SP-2 단계의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어 산림부장관령을 개정하면서 언급자 했던, 조림사업 투자절차의 확실성, 투자의 편이성, 투자비용의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부장관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 허가와 관련된 구비서류나 행해야 할 일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산림청의 '국내의 해외임업 진출 기업/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과제번호; S211011L010310)연구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참고 문헌

- FWI (Forest Watch Indonesia). Surat Keputusan. Assessed in <http://iuphkh.fwi.or.id/> on 27 August 2011.
- KFS (Korea Forest Service). 2008. *The Overseas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Master Plan*. 87 pp. [in Korean]
- KFS (Korea Forest Service).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491 pp. [in Korean]
- KFS (Korea Forest Service). 2011. *Korean Peninsula Forest Rehabilitation and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in Korean]
- PT. Ubis Agro Foresia (PT.UAF). 2011.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est Seminar*. 80 pp. [in Korean]
- TMFRI (The Ministry of Forestry Republic of Indonesia). Progress Forest Management Unit Area, Conservation FMU and Model FNU by October 2010. Assessed in <http://www.dephut.go.id/> on 27 August 2011.

